

# 『2022년도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2년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 사업기간 : 2022년 2월 25일(금) ~ 2022년 12월 30일(금)

□ 사업비 : 260,550천원

□ 사업목적

- 비영리 영역의 사회서비스 확대, 청소년 진로지도 및 취·창업자 지원, 신중년 활성화를 통한 고령화 사회 대응, 은퇴자 삶의 질 개선 및 우수사례 창출

□ 사업내용

- 대기업 퇴직 전문인력(참여자)의 노하우를 통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 컨설팅 등

\* 전문인력은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

자문위원(204명)				전문위원(32명)	
출신그룹별		분야별			
삼성	56	경영전략(사업계획, 신사업, 벤처·창업 등)	42	법률(변호사)	10
현대·기아차	18	경영관리(인사, 자금, 정보화e비즈니스 등)	27	특허(변리사)	8
LG	17	기술사업화(기술개발·도입, 시제품 생산 등)	32	세무(세무사)	6
SK	21	공장혁신(생산성 향상, 품질, 공정혁신 등)	39	관세(관세사)	4
한화·포스코	8	마케팅전략(판로개척, 차별화, 물류 등)	31	노무(노무사)	3
기타	84	글로벌전략(해외정보, 무역금융, FTA 등)	33	행정(행정사)	1

※ 센터 내 대기업 퇴직 인력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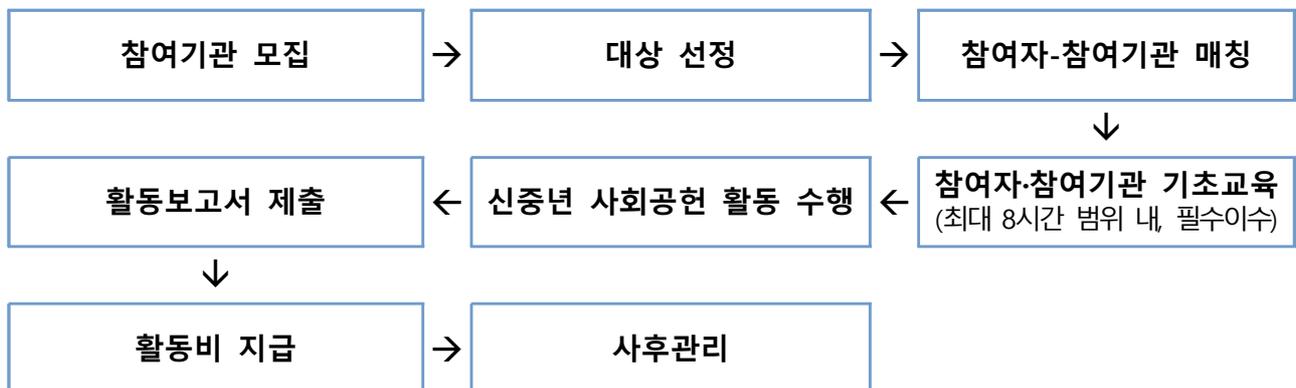
-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초·중·고·대학생 진로지도 멘토링, 창업자 교육

\* 청소년 진로상담, 대학생 취업 상담, 창업 멘토링 지도 등

대 상	기 관	주 제	참석인원(名)
중학생	서운중학교	산업 소개 및 직무 이해	80
	서초중학교	진로 탐색 및 멘토링	197
	방배중학교		76
	내곡중학교		35
고등학생	세종고등학교	산업별 및 직무 이해	160
	동덕여자고등학교		60
	서울시 교육청	4차산업혁명 (에너지환경·인공지능·자율주행차)	200
	미래교육박람회	진로 탐색 멘토링	140
	은행고등학교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진로특강	40
	개포고등학교	화학·기계·경영·법 분야별 멘토링	50

※ 센터 內 진로 직업 멘토링 현황

추진체계



## 2. 참여자 요건

□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은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함

- ① 당해 연도 중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의 미취업자  
\* 2022년 기준 1952년~1972년 출생자 해당
- ② 수행 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출 것  
가. 수행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

### ◆ '해당 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의 판단 기준

-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은 해당 참여자가 수행할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직업의 종사 또는 직무를 수행한 것을 의미함
- 해당 업무 관련 '경력'은 직업적 활동을 의미하므로, 취미, 봉사활동, 군복무 등 직업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경우나 사회통념상 해당 업무의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됨.
- 다른 부처의 유사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 활동분야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나. 수행 업무 관련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 자격 중 공인자격을 취득할 것

### ◆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의 판단 기준

-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은 해당 참여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회공헌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격을 의미함
- 사회통념상 전문자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은 제외함
  - 해당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전문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운전면허 등)
  - 의료법 등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자격(심리상담치료, 웃음치료 등)
  -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자격(풍수지리학, 취미.오락,설것이 등 성격이 강한 자격증 등)

다. 그 밖에 해당 시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가 정한 전문성 판단 기준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교육훈련과정(30시간 이상)의 이수

### 3. 참여기관의 자격

□ 운영기관은 참여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활동하도록 하여야 함

-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② 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③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④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⑤ 행정기관
- ⑥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⑦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지원단체 등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비영리법인·단체가 아니거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자치단체의 승인을 거쳐 참여가능)
- ⑧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 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참여기관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②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③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지 아니할 것
- ④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사회공헌 사업과 유사한 다른 부처(예: 보건복지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참여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 동일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수준 등이 차이가 있거나 연령제한 요건으로 인해 사회공헌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등 불가피한 경우 관할 시와 협의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음

## 4. 참여기관의 선정

□ 운영기관에서는 참여기관을 정하는 경우 신청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① [서식1]에 따른 참여기관 신청서

② 활동 대상 기관 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등

③ 사회공헌 사업에 관한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운영기관에서는 참여기관에게 다음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함

① 협약체결

- 운영기관과 참여기관의 협약체결 : 서식에 따라 참여기관은 운영기관의 의무, 책임 등 그 밖의 사회공헌활동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것(참여기관의 사업계획서 첨부)

- 참여자와 참여기관의 협약체결 : 서식에 따른 참여자와 참여기관은 활동내용, 기간 등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운영기관에서는 양자가 합의로 협약의 내용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회공헌 사업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을 인정할 수 있음

② 참여기관 교육 : 시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참여기관의 전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참조> '22년 참여기관의 교육의 주요내용

○ 교육기관 : 서울시에서 정한 기관

○ 교육내용 : 사회공헌 사업 제도 개요, 참여자의 역할과 의무 등

○ 교육시간 : 8시간 이상, 단 직전년도 참여이력이 있는 사람은 4시간 이상

- 혼합과정(집체교육과 인터넷교육 혼합)은 교육시간의 1/2이상은 집체교육으로 실시

- 1일 4시간 이상 실시(교육생이 희망하는 경우 식사 제공 가능, 단 이 경우 참여자의 지원금 지급 시 식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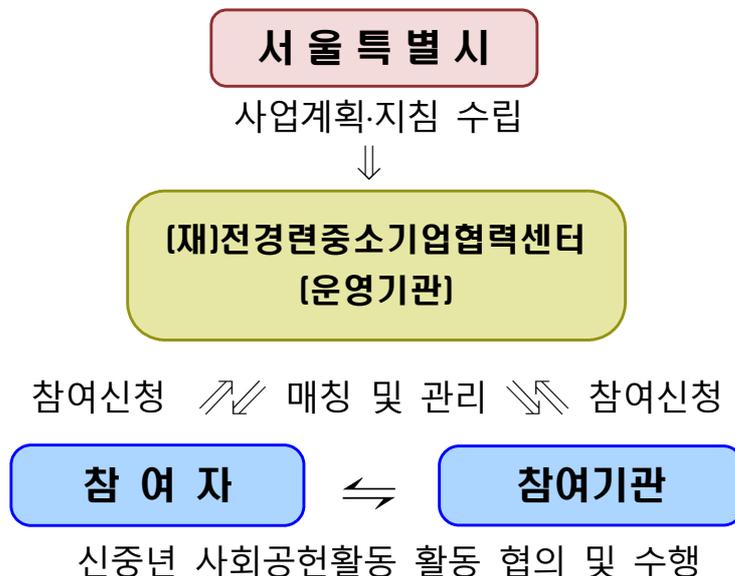
○ 교육이수 : 이수기준은 8시간 이상 수강(직전년도 참여 이력이 있는 사람은 4시간)으로 하되, 혼합과정은 집체교육을 1/2 이상 수강하여야 함

○ 교육기관의 의무 : 교육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 이내 교육시간, 참여자별 이수 여부 및 식사 제공 여부 등을 운영기관에 통보

- ③ 부정·부실 운영 등에 따른 불이익 : 참여기관의 부정·부실 운영에 따른 불이익에 관한 사항의 사전 안내
- 운영기관에서는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① 전담자의 지정 : 참여기관은 사회공헌활동 지원과 행정지원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 ② 참여자의 활동사항(활동일자, 활동시간, 활동내용 등)의 기록관리 : 월단위(전월 20일~당월 19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은 매월 22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포함하여 운영기관에 원본 제출하도록 함
  - ③ 참여자의 활동 종료 보고 : 참여기관은 참여자가 활동계획서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활동 중지를 희망하는 경우 활동을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자치단체에게 참여자 활동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하도록 함
  - ④ 참여기관에서는 매달 15일까지 사전 근무계획서 원본을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운영기관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활동실비, 활동 수당 등 정부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참여기관이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 기관별 역할 및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및 추진체계 >



##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4월 20일(수) ~
- \* 참여기관 선정여부는 개별통보

### 접수방법

- 아래 '신청(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에 접수
-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연락처	주소	이메일
02-3153-7950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A동 202호(DMC첨단산업센터)	<a href="mailto:fkilsc@gmail.com">fkilsc@gmail.com</a>

### 신청(구비)서류

- [서식1]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서 등
- 사회공헌 사업에 관한 전담인력에 관한 사항(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 [서식2, 3] 운영기관과의 협약체결에 관한 서류

[서식1]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기관 신청서

<b>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참여기관 신청서</b>			
기관명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기관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예비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공공/행정기관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단체		
업종		주요생산품 (영업종목)	
대표자		근로자수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팩스	
<b>1. 기관개요</b>			
설립 목적			
기관 연혁			
인력 현황	※ 인원구성 및 현황 기재		
<b>2. 신청 내용</b>			
신청인원			
활동분야 (2개 이상 가능)	1. 2. 3.		
활동내용 등	주요 활동 사항 및 업무 내용 (해당 단체 홈페이지 있을시 홈페이지 주소 기재)		
활동기간	~		
활동요일			
활동시간	시 ~ 시		
<p>○ 본 기관은 위와 같이 사회공헌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를 사회공헌활동 수행을 위해 활용함에 동의합니다.</p> <p>○ 위와 같이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신청하며 <b>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b></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기관 대표: (인)</p> <p>※ 신상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p>			
구비서류	조직형태를 입증할 서류 사본 1부. (비영리법인허가증, 사회적협동조합, 행정기관, 비영리민간단체증 등)		

## 20 년 참여기관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사 업 명 :

사업목적

-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 활동인원 :
- 활 동 처 :
- 활동내용
- 
- 

사업수행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



〈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분야 〉

경영 전략 (100)	101. 기업비전/중장기전략	IT 정보화 (700)	701.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102. 구조조정		702. 포토샵 및 일러스트 등
	103. 산업/기업분석		703. 동영상 제작
	104. 사업계획		704. IT시스템/보안통제
	105. 경영컨설팅		705. 홈페이지제작 등
	106. 기타 경영전략		706. 기타 IT정보화
마케팅 홍보 (200)	201. 광고홍보전략	법률 법무 (800)	801. 생활법률 관련
	202. 디자인 상표		802. 분쟁조정
	203. 유통전략		803. 국제법률
	204. 매장구성전략		804. 기업법률
	205. 고객/서비스전략		805. 국내외소송
	206. 프랜차이즈		806. 인수합병 등
	207. 가격전략		807. 기타 법률법무
	208. e-비즈니스	문화 예술 (900)	901. 공연 및 전시활동
209. 기타 마케팅 홍보	902. 행사기획 및 진행/보조		
인사 노무 (300)	301. 기업문화	행정 지원 (010)	903. 사진촬영
	302. 조직혁신		904. 관광안내
	303. 조직관리		905.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해설
	304. 인력관리		906. 기타 문화예술
	305. 노사관리		011. 일반사무지원
	306. 성과평가		012. 문서관리
	307. 직원만족	013. 자료정리	
	308. 기타 인사노무	014. 기타 행정지원	
재무 회계 금융 (400)	401. 재무관리/분석	교육 연구 (020)	021. 초중고 학습지도
	402. 분쟁관련		022. 예체능 지도
	403. 회계관리		023. 특수교육
	404. 세무관리		024. 진로지도교육
	405. 자금조달 등 기업금융		025. 조사연구
	406. 기타 재무회계금융		026. 기타 교육연구
외국어 (500)	501. 통번역	상담 멘토링 (030)	031. 청소년 상담
	502. 회화		032. 노인 상담
	503. 기타 외국어		033. 취업 상담
사회 서비스 (600)	601. 환경기술지원, 생태 복원		기타 (040)
	602. 의료보건	041. 요리	
	603. 응급재난구호	042. 체육	
	604. 사회복지	043. 미용	
	605. 기타 사회서비스	044. 기타	